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3. 12. 5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11월 14일

나. 발 의 자 : 김종태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
제4차 회의(2013년 11월 26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김종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·보호하기 위하여 위촉된 복지위원의
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 소외된 주민의 복지
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위원의 위촉, 임기 및 위촉해제, 결격사유 사항을 규정
- 2) 위원의 동별 정수를 규정
- 3) 위원의 직무와 의무를 규정
- 4)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위촉한 복지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복지위원의 위촉과 위촉 해제 사유, 동별 정수를 명시하였으며 위원들의 직무 및 의무사항, 활동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,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.

○ 본 제정안은 관할지역의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·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동 주민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따라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점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향후 복지위원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련 민·관 기관 및 지역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김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11월 일

발 의 자 : 김종태의원 외 명

1.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을 발굴·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.(안 제1조)

나. 위원 위촉, 임기 및 위촉해제, 결격사유를 규정함.

(안 제2조 ~ 안 제4조)

다. 위원 동별 정수를 규정함.(안 제5조)

라. 위원 직무와 의무를 규정함.(안 제6조, 안 제7조)

마.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8조, 안 제9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다. 합 의 : 복지정책과, 총무과, 기획예산과 합의

라. 입법예고(2013. 10. 29 ~ 11. 4) 결과 : 의견 없음

마. 타구제정 : 종로구, 서초구, 은평구, 동작구, 중랑구, 마포구
서대문구, 광진구, 송파구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라 영등포구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복지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1.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3조(임기 및 위촉해제)

- ①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, 사회복지대상자의 비밀누설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
제4조(결격사유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5조(정수)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2명 이상으로 한다.

제6조(직무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한부모가족 등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(이하 “사회복지대상자”라 한다)에 대한 선도 및 상담

2.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, 사회복지시설,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
4.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
5.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및 구정제안
6. 민간자원의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
7. 그 밖에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위원의 의무)

- ① 위원은 직무수행 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, 성별, 종교,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회의)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(교육) 구청장은 위원의 역할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)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관 련 법 령

□ 사회복지사업법[시행 2013.1.27] [법률 제11239호, 2012.1.26, 일부개정]

- 제8조(복지위원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읍·면·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-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복지위원의 자격, 직무,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- 제2조(복지위원)** ① 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·면·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이 위촉한다.

1.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
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·면·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.
-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 <개정 2008.11.5>
1.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모자가족·부자가족·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(이하 이 항에서 "사회복지대상자"라 한다)에 대한 선도 및 상담
 2.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 3.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,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
 4.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